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 - 6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회계 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,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,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포상금 지급대상 축소 조정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인 '지난년도 체납액'에서 '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'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함.

나.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정비 및 미비점 보완

- 상위법령(지방세기본법 제138조[포상금 지급])과의 일치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조문 삭제
- 미신고자에 대한 점용료 등을 부과한 경우, 포상금 지급기준을 '부과액'에서 '징수액'으로 변경

- 기타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른 조문 개정

다.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자치법규 정비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 [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]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 제한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별지 제2호서식「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(포상금 지급대상)」내 납세의무자의 '주민등록번호'를 '생년월일'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합의기관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5. 11. 26. ~ 12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6.1.14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바.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지난년도 체납액”을 “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 "체납액"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되는”을 “되어 있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지난년도”를 “지난 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지난년도”를 “지난 연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부과하게”를 “부과”로, “부과액”을 “징수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의2제2항 중 “제3조제5호 및 제6호”를 “제3조제5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년도”를 “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”로, “및 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및 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제5호 및 제6호”를 “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3조제5호 및 제6호”를 “제3조제3호 및 제5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”을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첨부 : 인감증명서 1부” 및 “(인감도장 날인)”을 각각 삭제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	제2조(지급대상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
1.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기능직·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민간인	1. 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 "체납액"이라 한다)---------- ----------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"은닉재산"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·예금·주식,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 ---------.
1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	1. ---------- ---------- 되어 있는 --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급기준)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	제3조(지급기준) ----------.
1.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	1. 지난 연도 ----------
2.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,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	2. 지난 연도 ----------
3. 도로·하천·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·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	3. ---------- 부과 ---------- 징수액----------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6.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공제받은 세액(이하 "탈루세액 등"이라 한다)의 추징	<삭 제>

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이 경우 "중요한 자료"란 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.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
나.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,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,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 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(1)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

5천만원 이하 : 징수액의 100분의 5 (2)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250만원+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(3)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: 400만원+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지급한도) ① (생 략)	제3조의2(지급한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.	② 제3조제5호----------.
제5조(대장비치)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(포상금지급대상)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(포상금지급대상)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, 정리하여야 한다.	제5조(대장비치) -----------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---------- 및 별지 제2호서식----------.
제6조(지급신청) ① (생 략)	제6조(지급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.	② ---------- 별지 제3호서식---------.

제7조(지급) ① (생 략)	제7조(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. 다만,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	② ----------제5호----------. ------ 제3조제3호 및 제5호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(포상금지급대상)

(단위 : 원)

납기	부과자(제보자)		세목	구분	발굴세원	납세의무자			징수일자	징수확인(계장)	포상금지급		
	직급(주소)	성명(생년월일)			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		포상금액	지급일	사유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(포상금지급대상)

(단위 : 원)

납기	부과자(제보자)		세목	구분	발굴세원	납세의무자			징수일자	징수확인(계장)	포상금지급		
	직급(주소)	성명(생년월일)				주소	성명	생년월일			포상금액	지급일	사유